

여성·아동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서대문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이하 “서대문구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서대문구의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경찰서(이하 “서대문경찰서”),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이하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여성안전사업』 관련 업무에 대해 상호 교류를 원활히 하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여성안전사업 관련 업무추진 시 서대문구청·서대문구의회·서대문경찰서·서부교육지원청·조성협의체 각 당사자간 상호 교류협력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여성대상범죄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 전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대문구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신뢰와 존중) 각 당사자는 여성안전사업 관련 업무에 대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기 고유 업무의 특수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3조(교류·협력 사항)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상호 교류·협력한다.

1. 여성안전사업 운영과 그에 대한 정보공유
2. 아동·여성들의 범죄 피해 예방·근절을 위한 자체활동 강화

제4조(당사자 역할)

1. 서대문구청의 역할
 - ① 여성안전사업의 기본방향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 ② 여성안전사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원한다.
2. 서대문구의회의 역할
 - ① 여성안전사업 추진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② 안전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여성안전사업 과제를 건의한다.

3. 서대문경찰서의 역할

① 여성들의 범죄 예방 근절을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② 여성안전사업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③ 여성안전사업 추진 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4. 서부교육지원청의 역할

①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여성안전사업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②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조한다.

5.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역할

① 여성안전사업 과제 발굴을 위해 협조한다.

②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한다.

제5조(일반사항)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제6조(권리·의무 승계) 본 협약서 체결 후 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제7조(효력의 발생) 협약은 각 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있으며, 협약 기간은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8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서는 5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구청장 문 석 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의 장 류 상 호

서울서대문경찰서
서 장 최 재 천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 명 수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회 장 임 현 진